

19세기 말 지방관의 업무와 기록물에 관한 연구*

- 吳弘默(1834~1906)의 『咸安郡叢瑣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ministration of a Local Governor at the End of Nineteenth-Century Joseon
- Focusing on Oh Hoengmuk's *Records of Every Little Detail about Haman-gun* -

손 계 영 (Son, K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지방관아 기록물 조사·관리·보존 |
| 2. 오횡묵의 생애와 저작 | 6. 맺음말 |
| 3. 지방관의 업무와 기록물 생산 | <참고문헌> |
| 4. 지방관 생산 기록물의 종류 | |

<초 록>

19세기 말 함안지역 지방관 오횡묵의 사적 일기이자 공적 일지인 『함안군총쇄록』을 통해 오횡묵의 업무와 관련 기록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횡묵의 대민정치와 지역통치에 있어 기록물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기록물을 통해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였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령칠사를 중심으로 함안군수 오횡묵의 업무를 다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록물에 근거하여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밝혔다. 둘째, 오횡묵이 임지를 통치하기 위해 생산한 기록물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함안관아에서 기록물을 조사하였던 공간과 방식에 대해 다루었으며, 지방관아 기록물 보존을 위한 방편에 대해 다루었다.

要語: 吳弘默(1834~1906), 『함안군총쇄록』, 지방관, 수령, 업무, 기록물, 기록문화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administrative works and related records of Oh Hoengmuk, a local governor in the late nineteenth-century Joseon, through *Records of Every Little Detail about Haman-gun* (Haman-gun chongswaerok, 咸安郡叢瑣錄) which is his private and public journal. This paper attempted to insist that his records were the most important tool in public politics and local governance, and so that he displayed strong control over the local people. The summary of what was discuss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n evaluating Oh's works against magistrate's seven duties (守令七事), it was revealed that his work was carried out based on records. Secon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produced by Oh to govern the post were investigated. Third, this paper dealt with the spaces and the means used by Haman Government Office to examine the records and inspected the archiving methods used by the local government agencies.

Key words: Oh Hoengmuk, *Records of Every Little Detail about Haman-gun*
(Haman-gun chongswaerok, 咸安郡叢瑣錄), Local Governor, Administrator,
Administrative Works, Records, Archival Culture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A8013023)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sonkey@cu.ac.kr)
접수일: 2018년 4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6월 11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12일
서지학연구, 제74집, 31-52,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4.31]

1. 머리말

조선시대 각 지방 군현의 수장인 지방관 수령의 임기는 『경국대전』에 따라 5년으로 규정되었지만, 중앙에서 파견되는 御史·監察의 감시와 관찰사의 평가 등에 의해 중도파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토착세력과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본향에는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관의 대부분은 중앙에서 파견된 외지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외지인인 수령이 해당 지역의 수장으로서 그 지역민을 다스려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력이 없이 해당 지역의 수장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를 들면, 18세기 후반 목천현감이던 黃胤錫(1729~1791)은 큰며느리 장례로 휴가를 다녀온 사이 향리를 비롯한 40명이 조직적으로 官穀을 훔치는 逋欠 사건이 발생하였고, 告課 시기와 맞물려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려했던 황윤석은 해당 사건을 명확하게 처벌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는 향리들의 모함을 받아 세금을 함부로 거두었다는 이유로 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파직되기에 이르렀다.¹⁾ 이와 같이 지방관의 대민정치와 지역통치를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지방관의 통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기록물이었다. 수령의 모든 업무는 항상 기록물을 생산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지방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야 했고, 향리들과 면리조직 행정실무자의 부정행위는 기록물을 근거로 하여 진위조사와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때문에 지방관에게 기록물은 해당 지역의 대민정치를 견고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던 지방관으로 19세기 후반의 吳欽默(1834~1906)에 주목하였다. 그는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순간부터 체임할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의 생활을 일지 방식으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관으로 재임하였던 旌善, 慈仁, 咸安, 固城, 智島 등의 지역별로 『정선군일록』, 『자인현일록』, 『함안군총쇄록』, 『고성부총쇄록』, 『지도군총쇄록』 등 별도로 일지 형식의 책자를 제작하였다. 해당 일지에는 지방관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만났던 인물, 받았던 편지, 관아에서 생산되거나 살펴보았던 문서 및 자료, 먹었던 음식 등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오형묵의 이와 같은 자료는 19세기 후반 지방관아의 상황과 지방관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형묵의 지역별 일지 자료 가운데 『함안군총쇄록』을 대상으로 함안군수 오형묵이 기록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 행위와 대민정치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표출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방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공적 기록물의 종류를 분석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 기록물을 이용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함안군총쇄록』을 주요 대상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오형묵이 함안에서 지방관으로서 재임한 기간이 타지역보다 긴 4년이었기 때문에 기록한 일지의 분량이 많고, 기록물을 이용한 통치행위의 사례가

1) 노혜경, “18세기 후반 수령·향리의 갈등양상 - 木川縣 鄉吏 非理 사건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26집(2005), 209-234.

비교적 많이 서술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방관과 지역민, 지방관과 하위조직, 지방관과 경상감영 관찰사 등과의 소통을 보여주는 사례가 다수 수록되어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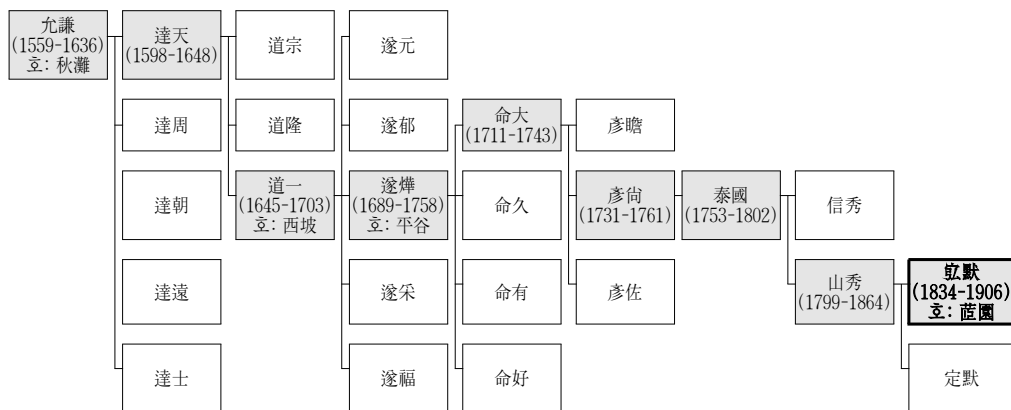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앙·감영·군현·지역민의 소통에 있어 지방관인 수령이 어떻게 기록물을 이용하였는지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함안군수 오횡묵의 사례를 통해 지방관의 업무, 지방관이 생산한 공적 성격의 기록물 종류와 내용, 지방관아에서 기록물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관리·보존했는지 등 기록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2. 오횡묵의 생애와 저작

이 연구에서는 오횡묵이 함안군수 시절에 작성한 『함안군총쇄록』을 중심으로 지방관의 업무와 지방관 생산 기록물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오횡묵의 생애와 지방관으로서의 행적, 그의 기록과 저작의 종류 및 성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횡묵의 본관은 海州, 字는 聖圭, 號는 菑園·菑人·澤舫이다. 1834년(순조 34)에 출생하여 73세인 1906년(고종 43)에 사망하였다.²⁾ 『海州吳氏大同譜』에 따르면 그는 吳允謙(1559-1636)의 8세손이자 吳道一(1645-1703)의 6세손으로 확인되지만,³⁾ 오횡묵 자신과 두 아들이 무과 출신이라는 점, 閭巷 시인들과 교류하였다는 점을 들어 유력한 가문의 양반 가계가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⁴⁾ 그는 41세인 1874년(고종 11)에 武科에 합격하였는데, 이전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특별

2) 오횡묵의 생애에 관한 내용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오횡묵의 『叢瑣』 해제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해제는 『海州吳氏大同譜』, 『承政院日記』, 『咸安郡叢瑣錄』, 『固城郡叢瑣錄』, 『叢瑣』, 『叢瑣謾選』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3) 해주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해주오씨대동보』 (서울: 해주오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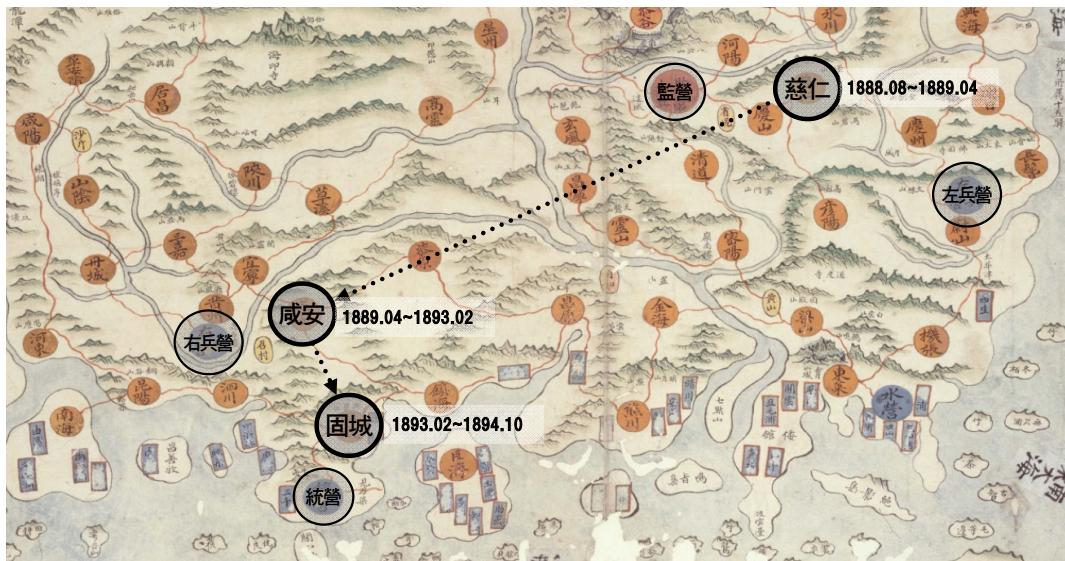


오횡묵의 가계 (출처: 『海州吳氏大同譜』)

4) 박수정, “『叢瑣錄』 자료 해제 및 교육적 가치,” 『교육사연구』 제18집 제1호(2008), 41.

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무과 합격 이전에는 문인으로서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53년부터 1866년까지 鄭慶濬, 金基仁, 吳膺默, 吳商默, 趙弘烈, 吳定默, 金鍾健, 姜敏植, 安孝俊 등과 함께 禊會를 열고 활동하는 동안 상당량의 시문을 남겼다. 무과 합격 이후 1877년에 守門將이 되었으며, 1883년 軍資監 判官, 1884년 工桑所 監董郎官 등을 지냈다. 1886년 흉년과 역병이 돌아 굶주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영남지역의 嶺南別餉使로 임명되어 노비 환속과 백성 구출에 힘썼다. 영남별향사로 임명되었던 1886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81일 동안 영남지역을 순시하며 쓴 일기가 전해지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⁵⁾

영남별향사 역임 이후인 50·60대에는 주로 각 지역의 지방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1887년 旌善郡守를 시작으로 1888년 慈仁縣監, 1889년 咸安郡守, 1893년 固城府使, 1896년 智島郡守, 1897년 麗水郡守, 1899년 眞寶郡守, 1900년 益山郡守, 1902년 平澤郡守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방관 재임 시 근무 평가인 殿最에서 계속 ‘上’의 점수를 받았고, 특히 정선군·자인현·함안군에서는 德政을 칭송한다는 의미의 萬人傘을 헌정받았다. 영남지역에서 지방관으로 재임한 지역은 자인현, 함안군, 고성부 등 3곳이다. 부임한 지역과 재임기간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오홍묵이 지방관으로 재임한 영남지역 및 재임기간
(규장각 소장 海東地圖, 古大4709-41)

또한 정선군·자인현·함안군·고성부·지도군에 재임하는 동안에는 공적인 근무 일지이자 사적 일기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기록을 남겼는데, 해당 기록은 지역명을 넣어 『정선군일록』, 『자인현일록』,

5) 『嶺南救恤日記』(국립중앙도서관 소장, BC古朝31-50).

『함안군총쇄록』, 『고성부총쇄록』, 『지도군총쇄록』 등으로 이름하였다. 각각의 서명과 작성기간, 분량, 소장처 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오횡묵의 지방관 재임시절 작성한 기록

	서명 및 책수	작성기간	소장처
1	旌善郡日錄(1책)	1887.03.05.~1888.08.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	慈仁縣日錄(1책)	1888.08.02.~1889.07.1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	咸安郡叢瑣錄(3책)	1889.03.09.~1893.02.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상대 도서관
4	固城府叢瑣錄(2책)	1893.01.29.~1894.11.2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상대 도서관
5	智島郡叢瑣錄(2책)	1896.02.11.~1897.05.1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대 도서관

오횡묵의 또 다른 대표적 저작은 세계와 우리나라 지리를 다룬 지리서 『輿載撮要』이다. 서구의 지식을 수용하여 세계 각국의 지리와 國勢, 우리나라 전국의 읍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등을 서술하였다. 오횡묵은 1892년에 『여재촬요』의 집필을 완료하였고, 함안군수 임기 말년에 『여재촬요』를 함안관아에서 목판으로 새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894년 고성부사로 부임 후 함안에서 책판이 완성되었고, 완성된 책판은 고성으로 옮겨졌다. 함안군수와 고성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집필과 책판이 완성되었던 『여재촬요』는 이후 1896년 學部에서 1권으로 요약하여 교과서로 편찬·보급됨으로써 개화기 교과서의 효시로 널리 활용되었다. 규모가 큰 지리서가 국가가 아닌 한 개인의 노력으로 저술되어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尋眞錄』, 『勝題拾遺』, 『春雨室實記』, 『工桑所實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저술도 있어 그가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인 관심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횡묵은 각 지역별 『총쇄록』에 수록된 시문을 뽑아 趙炳鎬, 鄭泰京, 金斗實 등 주변의 지인들에게 배포하였다. 1898년에는 『총쇄록』에 수록된 시문을 뽑아 自篇하고, 金寅吉에게 서문을 받아 『叢瑣漫選』이라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시문집 형태로 정리하였는데, 대표적인 저작은 『叢瑣』, 『叢瑣錄選』, 『叢瑣錄』, 『叢瑣詩抄』, 『菑園詩抄』 등의 명칭으로 전해진다.⁶⁾ 현전하는 오횡묵의 시문 선집 가운데 가장 방대한 분량이 수록된 것은 『총쇄』(장서각 소장)이다. 이는 罪印寫本으로 24책 분량이며, 현재 『한국문집총간 속』 141~142집에 수록되어 있다. 『총쇄』는 지역별 총쇄록을 통합하여 크게 詩와 文으로 재편하고, 시는 시기별로, 문은 문체별로 구분하여 편차하였다.⁷⁾ 오횡묵은 무과 출신으로 지방관아 수령직을 역임한 관료이지만, 시문에 능하였다는 점과 상당량의 저술을 남겼다는 점에서 문재와 학식을 겸비하였던 인물로 평가된다.

6)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叢瑣漫選』(국립중앙도서관, 9책), 『叢瑣』(장서각, 24책), 『叢瑣錄選』(국립중앙도서관, 3책), 『叢瑣錄』(고려대 도서관, 5책), 『叢瑣詩抄』(국립중앙도서관, 2책; 일본 東京大學 阿川文庫, 2책), 『菑園詩抄』(국립중앙도서관, 2책), 『慶尙道咸安郡叢瑣錄詩選』(국립중앙도서관, 1책)

7)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의 『叢瑣』 해제를 참고하였다.
(서인숙, “『叢瑣』 해제”,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3. 지방관의 업무와 기록물 생산

守令七事는 지방관으로서 담당해야 할 일곱 가지 업무를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田野關, 戶口增, 賦役均, 詞訟簡, 盜賊息 등 다섯 가지 수령의 업무를 守令五事로 규정하여 이행한 바 있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이를 기본으로 몇 가지를 추가하여 수령철사를 기본업무로 삼았는데, 이는 농상을 장려하는 農桑盛, 학교를 늘려 교육을 장려하는 學校興, 소송을 간명하게 하는 詞訟簡,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한다는 奸猾息, 군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軍政修, 호구를 늘린다는 戶口增,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한다는 賦役均 등이다. 이상 7가지 수령의 업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經國大典』에 수록되었고, 이러한 법적 규정은 중앙집권적 질서체제를 지방에서도 동시에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오형묵은 함안에 부임한 첫날 관아의 곳곳을 돌며 건물의 명칭 및 위치, 특징 등을 『함안군총쇄록』에 남겼다. 그리고 수령의 공식 업무공간인 東軒의 기둥에 수령철사와 관련된 柱聯이 걸린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였다.

문을 들어서면 곧 東軒 10칸이 있는데, 건물이 한 층의 축대 위에 우뚝 섰다. 그 위에 琴鶴軒이란 편액이 있고, 기둥에는 7구의 柱聯이 있었다. 봄에 골짜기에 씨 뿌리니 농사가 풍성하고, 마을이 골짜기마다 준비하니 호구가 늘어난다. 새로 창고가 차니 세금이 고르고, 날로 새롭고 커지니 학문이 일어난다. 말을 길러 보내니 군대가 갖추어지고, 여진 정치를 편안히 하니 송사가 드물어지고, 사람들이 도를 편안히 여기니 감사함이 그친다. 이것은 대개 면과 동의 이름을 따서 守令七事를 서술한 것이다.⁸⁾

함안의 면과 동의 이름을 차용하여 수령의 일곱 가지 업무를 나무관에 조각하였고 이를 수령의 주요 업무공간인 동헌의 기둥에 걸어 둠으로써, 수령이 수행해야 할 일곱 가지 업무를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실제 오형묵의 업무를 守令七事로 구분하여 관련 주제어와 해당 기록물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함안군총쇄록』의 수령철사 관련 주제 및 기록물 종류

守令七事	핵심어	관련 주제어	관련 기록물 종류
農桑盛	勸農	勸農繪音, 堤堰 修築, 防淤, 濬溝, 反耕, 出糞, 畜庫, 貯水, 祈雨祭 등	傳令, 節目, 甘結, 牒報 등
學校興	勸學	訓長, 講學, 巡題, 慶科, 詩會, 文學勸勉, 校齋, 講會, 白日場, 講學長, 句製 등	傳令, 下帖, 節目, 甘結, 牒報 등
詞訟簡	詞訟	健訟, 議送, 首刑吏, 覆檢, 獄事 등	傳令, 節目, 牒報, 侂音, 檢案 등
奸猾息	奸猾	場市, 動鈴輩, 南北黨, 偽災, 吏民逋欠, 偽造, 投錢, 骨牌, 脚戲, 賊徒, 賊盜 등	傳令, 下帖, 節目, 甘結 등
軍政修	軍政	軍布, 炤硝, 砲軍, 軍摠, 軍額, 軍木 등	節目, 事目, 甘結 등
戶口增	戶口	縮戶, 戶籍都監選穀, 災結, 帳籍 등	下帖, 節目, 稟目, 甘結 등
賦役均	賦稅	民戶, 家座, 戶布, 結夫, 軍布, 書員, 結卜, 公錢, 徵族, 戶斂, 結役 등	傳令, 下帖, 節目, 甘結 등

8) 『함안군총쇄록』 1889년 4월 21일.

“入門卽東軒 十間屋子 巋然于一層築臺上 扁以琴鶴軒 柱面聯揭七句曰 耕春谷而農盛 村比谷而戶增 新倉實而賦均 日新大而學興 放馬輪而軍修 安仁政而訟簡 人安道而奸息: 此蓋因面洞名 而敘守令七事者也.”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령철사 항목에 따라 오횡목의 업무와 기록물의 생산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령의 업무인 農桑盛은 수령의 勸農과 직결된다. 농사는 백성들 먹거리의 원천이었기에 오횡목은 직접 들판을 순시하며 부지런한 농부와 아낙들에게 담배·바늘·돈 등을 선물하기도 하였고, 제방과 봇둑의 보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또한 마을의 부지런한 이를 農監으로 선발하여 매월 2일과 17일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보고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상과 벌을 주기도 하였고, 가난한 농가에 소와 농기구를 빌려주어 농사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애썼다. 가뭄이 심한 시기에는 15차례에 걸쳐 기우제를 손수 시행하였으며, 장병을 파견하여 물을 공평하게 댈 수 있도록 감독하게 함으로써 힘있는 자의 횡포를 막도록 하였다. 또한 농권의 내용이 담긴 임금의 綸音이 경상감영을 통해 전달되면, 즉시 고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고,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농사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傳畵과 節目을 작성하여 各面과 各洞에 배포하는 일을 상당히 중요시하였다.

수령의 업무 중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學校興이다. 오횡목은 함안을 다스림에 勸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는데, 권학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巡題·講會·白日場 등의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⁹⁾ 우선 문장과 학문이 뛰어난 자를 訓長으로 추대하고, 各洞의 書齋를 중심으로 훈장과 학생의 성명·나이 및 우수학생을 오횡목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선비들을 대상으로 향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거행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시상하고, 이들을 음식으로 대접하였다. 두 번째는 함안 선비들과의 詩會 활동을 통해 권학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시문을 통한 지역 선비들과의 교류는 이전의 지역인 정선·자인에서도 이루어졌던 방법이었다. 別川·太平樓·二藪亭·無盡亭 등의 정자에 함안의 선비들을 모아 詩會를 가졌는데, 많은 경우에는 300명이 모였다. 오횡목은 이들을 위해 관악을 연주하여 시흥을 북돋우며 참석한 이들에게 점심값을 나눠주었고, 시회에서 작성된 시들을 모아 별도의 詩集으로 제작하는 등 고을 사람들을 권학으로 이끌었던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다.¹⁰⁾

수령의 업무로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詞訟簡이다. 『함안군총쇄록』에 의하면 함안지역은 유독 訴狀 접수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횡목은 1889년 12월 ‘책상 위 소송장이 산처럼 쌓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정도로 백성들의 소송이 많이 접수되었고, 소송 관련 업무가 상당하였다.¹¹⁾ 같은 해 연말에는 하루 40여 건의 소송이 접수되자 오횡목은 이를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날 백성들의 소송이 40여 장이었다. 고을에 부임한 이후 정령을 조처하는 사이에 반드시 권면하고 징계하는 뜻을 부쳤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마음과 힘을 다하였으니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지금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날에 이른바 소송 문건이 이처럼 많으니 평소의 소송은 미루어 알 만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풍습인가.¹²⁾

9) 채휘균, “시험의 힘: 지방관의 영향력 행사와 이미지 형성,” 『영남학』 15(2009).

10) 『함안군총쇄록』 1890년 3월 27일.

11) 『함안군총쇄록』 1889년 12월 26일.
“拍案塵塵訟牒堆 蒲蘆爲政愧疏才.”

하루하루 많은 건수의 소송이 접수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함안군수로서의 고역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때문에 오횡목은 함안의 健訟에 있어 폐단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건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향청에서의 소장 사전승인 제도를 만들었다. 즉 향회에서 승인받고 소장에 圖署를 받아야 관아에서 해당 소장을 접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소송의 건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한편, 향청의 권한을 높인 사건이다. 오횡목은 이러한 체계를 만들고, 이를 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령을 작성하여 각면에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개 원통함이 있으면 소송을 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한 것이요, 관공서로부터 곧 허락함은 송사의 필연이거늘, 근래에 세속의 풍습이 어긋나고 인심이 불량하여 종일 소송한 것이 근거가 없는 말들로 쌓여서 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병마개로나 쓰일 종이일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또 혹 이름을 흠쳐서 소송을 하고 이름을 빌려서 올려, 變幻이 無常하고 眞僞를 분변할 수가 없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어찌 소송이 簡易하게 되는 날이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백성을 막론하고 만약에 소송하려고 오는 자는 그 소송장을 먼저 鄉廳에 圖署를 받은 뒤에 와서 올릴 것이다. 만약에 혹시 사사로 꾸미고 도서를 위조하는 폐단이 있다면, 곧 소송하는 이치의 曲直을 막론하고 해당 백성은 중한 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명령하는 말로써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여 범을 어겨 벌을 받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¹³⁾

오횡목은 수령철사의 사송간을 실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소송을 간명하게 하고 健訟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자 향청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으로 향청의 사전승인 단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오횡목은 수령의 철사에 포함된 奸猾息, 賦役均 등과 관련하여 함안의 공금 횡령 및 세금 체납 관련 업무에 매진하였다. 오횡목이 부임할 당시 함안군은 吏民의 공금 횡령과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고질적인 폐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향반과 아전이 한 통속이 되어 가짜 재해를 꾸미고 그 감면액을 착복하였다. 民逋를 조사할 때 뇌물을 주면 세금을 감해주고 힘없는 백성에게 더 거두었으며,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으면 불량배와 군인을 동원하여 미납자의 일가친척에게 강제 징수하는 등 누적된 폐단으로 인해 체납 세금과 횡령 공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횡목은 체납 세금과 횡령 공금의 책임소재를 과거의 기록물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향교와 백성들이 상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세금을 거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안군총쇄록』에 상세히 기록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기록물이 생산되었는데, 가장 많은 종류로는 오횡목이 향회에 보내는 下帖와 鄉會의 鄉人들이 올린 稟目, 품목에 대해 답한 題辭·題音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을 사람들

12) 『함안군총쇄록』 1889년 12월 29일.

“是日 民訴爲四十餘張 一自莅邑後 政令做措之間 必寓勸懲之意 自以爲殫竭心力 庶幾有實效之可見矣 今於迫歲之日 所謂抱牒者 如是夥然 平日之訴 推可知也 是何風習.”

13) 『함안군총쇄록』 1890년 6월 22일.

“大抵有冤卽訴 理之固然 從公立落 訟之必也是去乙 挽近 俗習乖戾 人心不良 終日之訴 莫非無根之說 積成之軸 乃是覆瓿之簡 益除良 且或偷名之訴 借名之呈 變幻無常 眞贗莫辨 誠如是也 豈有訟簡之日乎 從今以後 無論某民 如有來訴者 持其狀本 先踏鄉廳圖署後 來呈是矣 如或有飾私幻踏之弊 則勿論訟理曲直 當該民 難免重繩矣 以此令辭 互相警飭 俾無犯科抵罪之地宜當向事.”

에게 또는 각면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書員과 任掌에게 보내는 傳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오횡목은 공금 횡령과 세금 체납의 폐해를 철저히 기록물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록물 검토 등의 업무 과다로 인해 외지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淵明歸去來	도연명은 고향으로 돌아가
情話悅親戚	친척들과 다정히 얘기하기 즐겼지
休怪白髮多	백발이 많다고 괴이하게 여기지 마라
我且談經歷	나 또한 겪은 일을 얘기하리라
民貧租稅急	백성들 가난하여 세금내기 급한데
鞭撻令人悲	채찍을 쳐서 사람을 비통하게 만드네
簿牒日盈案	장부와 문서는 날로 책상에 쌓이니
聰明難自持	충명한 사람도 부지하기 어렵다네 ¹⁴⁾

오횡목은 함안군에 부임한 이후 거의 일 년 가까이 철저히 기록물을 점검함으로써 공금 횡령과 세금 체납의 폐단을 일단락 해결하게 되었다. “함안군에 부임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장부와 문서 더미에 허우적대고, 꾸짖고 닦달하는 일에 번뇌하느라 잠시라도 여유롭고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때를 얻을 수 없었다.”며 과도한 업무에 대해 한탄하기도 하였다.¹⁵⁾

한편 오횡목의 뛰어난 업무능력은 고을 사람들과 조정에까지 인정받았다. 함안의 폐단을 바로잡고 권농과 권학으로 고을을 다스린 결과, 근무평가인 殿最에서 매년 ‘上’을 받았으며, 1890년 함안의 고을 사람들은 오횡목의 치적을 추앙하고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萬人傘’을 바쳤다.¹⁶⁾ 여러 단계를 거쳐 이러한 사실이 조정과 임금에게 보고되어 2년간의 함안군수 임기가 끝났음에도 유임이 결정되었고, 오횡목은 총 4년간 함안군수를 역임할 수 있었다.

4. 지방관 생산 기록물의 종류

함안군수 오횡목은 임지를 통치하기 위해 鄉校·養士齋·查實所 등의 하위조직뿐만 아니라 各面의 執綱·頭民·洞首·訓長·大小民人에 이르기까지 각종 소식과 명령을 전달하고, 감영 등의 상위 기관에는 함안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함안군수 오횡목이 지방관으로서 생산한 공적

14) 『함안군총쇄록』 1889년 7월 15일.

15) 『함안군총쇄록』 1890년 3월 27일.

“抵到郡周歲之間 滂碌於簿書之會 薰惱於椎剝之場 偷不得暫時寬閒快豁之境矣.”

16) 전 고을 사람의 이름을 새긴 일산이라 하여 千人傘 또는 萬人傘이라 하였고, 비단에 각자의 이름을 자수로 놓았다고 하여 繡傘이라고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頌德碑와 함께 수령의 공덕을 기리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함안 사람들은 오횡목에게 만인산을 헌납할 때 오횡목의 仁政과 만인산 헌납 의도를 等狀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오횡목에게 전달하였고, 오횡목은 이에 대해 題辭를 작성하여 돌려주었다(『함안군총쇄록』 1890년 6월 3일).

성격의 기록물을 『함안군총쇄록』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종류와 건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함안군수 오횡목이 생산한 공적 기록물의 종류 및 건수

기록물의 종류	傳令	下帖	(稟目的) 題辭	牒呈· 牒報	節目, 事目	勸善文, 布諭文	檢案	(等狀의) 題辭	防報
건수	43건	26건	20건	15건	6건	3건	3건	2건	2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횡목이 생산한 공적 기록물 가운데 『함안군총쇄록』에 수록된 가장 많은 건수의 기록물은 지역민에게 각종 소식과 명령을 전달한 傳令(43건)이며, 그 다음으로는 鄉校·查實所 등의 하위조직에 전달한 下帖(26건)이다. 또한 鄉校 등에서 수령에게 올린 稟目에 대한 처분인 題辭·題音(20건)과 경상감사에게 함안의 상황을 보고한 牒呈·牒報(15건) 등이 그 다음으로 많은 건수로 기록되었다. 이외에 오횡목이 생산한 공적 기록물로는 함안의 규정과 조목을 기록한 節目·事目(6건), 勸善文·布諭文(3건), 살인사건 등에 따른 사체 해부결과·사망원인 등을 기록한 檢案(3건), 고을 사람들이 올린 等狀에 대한 판결인 題辭(2건), 상급기관의 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상급기관에 그 사유를 보고한 防報(2건) 등이 확인된다. 이상의 결과는 『함안군총쇄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오횡목이 생산한 기록물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¹⁷⁾

본고에서는 10건 이상 확인되는 전령, 하체, 품목의 제사, 첩정(첩보)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품목의 제사는 엄격히 구분하였을 때, 기록물의 종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 제외하였다.¹⁸⁾ 전령, 하체, 첩정(첩보) 3종을 대상으로 각각의 성격과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傳令이다. 전령은 초기에는 軍營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존하는 전령을 분석해보면 군영에서 사용한 사례보다 지방수령이 管下의 지역민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사용한 전령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¹⁹⁾ 오횡목의 『함안군총쇄록』에 수록된 전령을 살펴본 결과 전령은 모두 43건이며, 전부 지역민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었다. 전령을 보낸 일자와 내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17) 『함안군총쇄록』에는 수령 오횡목이 아전들에게 보내거나 관아의 아전들이 오횡목에게 보낸 기록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령과 아전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牌子, 告目 등의 기록물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표 3>의 건수는 오횡목이 총쇄록에 기록한 건수이며, 이는 실제 생산된 기록물의 수량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18) 稟目은 향교나 서원에서 그 지역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이며, 수령에게 어떠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진정하는 성격의 기록물이다. 수령이 품목을 접수하면 그 내용에 대한 처분을 원본에 작성하여 발급한 향교 또는 서원에 돌려준다. 따라서 수령의 처분인 題辭는 엄격하게 구분하면 기록물의 종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19) 박경수의 연구는 전령 문서의 사용·폐지, 전령의 행이체계·문서식, 전령의 문서형태별 분류·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참고가 된다(박경수, “조선시대 傳令 文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

<표 4> 오형목이 보낸 傳습과 그 내용

	일자	수취자	주요내용
1	1889.04.24	各面	함안에서 지켜야 하는 36조항의 禁斷 사항을 고을에 알림
2	1889.04.25	邑場·宮北場·平林場	읍장·궁북장·평립장 등 각 장시의 폐단을 금지함
3	1889.04.27	執綱·各洞戶·首有司	고을 인구수 파악 위해 家座成冊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명함
4	1889.04.28	各面	권농·권학 관련 조문을 배포하여 농사와 학문을 권장함
5	1889.04.29	一鄉(輪示)	農務로 바쁜 시기에 필요한 曉飭 전달
6	1889.05.06	鄉校	鄉所 모임의 지나친 소비를 금지할 것을 명함
7	1889.05.12	一境	마을 동냥배의 행패를 금지할 것을 명함
8	1889.06.17	各面	고을의 訓長을 추대하고, 향교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명함
9	1889.06.25	各面執綱·洞首	公錢 문제로 각면의 집강과 동수들에게 대기하라고 명함
10	1889.10.22	各面書員	結負에 변동 있을 경우 사실대로 조사할 것을 명함
11	1889.11.15	各面書員	각면 서원들이 作夫하도록 분부함
12	1889.12.23	一鄉	吏民逋欠으로 인한 公錢을 일괄 배당 방식으로 징수함을 알림
13	1890.01.16	各面	各里의 미징수 公錢을 기일 내 징수할 것을 명함
14	1890.01.20	各面·各洞	公錢의 신속한 징수를 위해 각면·각동에 알림
15	1890.01.26	各面洞任掌	각면·각동 任掌들의 公錢 逋欠의 폐단을 금지함
16	1890.02.05	各面	結數에 배당하여 징수함을 선포하고, 頭民의 징수를 명함
17	1890.윤2.10	場市	곡식의 독점 거래와 밀거래 등의 폐단을 금지함
18	1890.03.01	一鄉	고을에 권농 조문의 준수를 명함
19	1890.03.26	該面(蓼浦 儉巖)	草丁들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禁草를 풀어줄 것을 명함
20	1890.04.17	密陽 場市	밀양 시장의 폐단을 금지함
21	1890.04.19	各面	動鈴輩의 곡식 약탈 등의 폐단을 금지함
22	1890.04.25	一鄉	고을의 수리 시설과 독을 조사하여 수리할 것을 명함
23	1890.04.26	崇德殿 後孫	경주 崇德殿 修繕 문제에 대해 답변함
24	1890.04.28	各面	예조에서 보낸 東朝國恤과 成服 절차 등을 고을에 알림
25	1890.05.17	執綱·各該洞首頭民	무자년 災結로 징수금 중 일부를 백성들에게 돌려줌을 알림
26	1890.06.21	各場市	시장에서 麻塵·木花塵 등을 약탈하는 무리들의 폐단을 금지함
27	1890.06.22	各面	訟牒에 향청의 圖署가 있어야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림
28	1890.06.23	場市	시장에서 負軋商의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신칙할 것을 명함
29	1890.06.25	執綱·各洞首·大小民人	紅牌와 教旨를 위조하는 무리들을 주의할 것을 알림
30	1890.07.11	執綱·頭民·洞首·大小民人	고을 사람들의 吏民逋欠 公錢 납부 과정에서의 폐단을 금함
31	1890.07.17	各面	미징수 吏逋를 각면에 배정하는 과정에 착오 있었음을 알림
32	1890.07.27	一鄉	道路·橋梁 등의 파손과 결손을 보수할 것을 명함
33	1890.07.27	民	重修節目·曳木條規·役費錢區別·破屋上樑擇日 등을 알림
34	1890.08.01	各場市	시장에서 投錢·骨牌 등의 폐단을 금함
35	1890.08.12	各洞·各里 執綱	미징수 공납분을 각동·각리에서 스스로 납부하라고 명함
36	1890.08.14	一鄉	씨름 등 승패를 정하는 놀이의 다툼에 대한 폐단을 금지함
37	1890.08.18	執綱·洞首·大小民人	시장에서의 폐단을 금하는 條規를 알리고, 폐단을 금지함
38	1890.08.28	各洞	各洞마다 洞譏察을 결성하여 이들의 고을 禁斷事 단속을 명함
39	1892.03.10	蔚山 市人	울산 시장의 폐단을 금지함
40	1892.09.13	各面	각읍 田畵災結의 精略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함
41	1892.10.11	各面書員	각면 書員이 看坪과 考卜 등을 조사할 것을 명함
42	1893.02.16	一鄉	旬題에 대한 시장 관련 사항을 알림
43	1893.02.21	各面	함안 結稅 폐단이 다시 變易되지 않아야 된다고 알림

<표 4>에서 전령의 수취자를 분석해 보면, 一鄉·一境·各面·各洞·大小民人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고을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2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執綱·洞首·書員·任掌·頭民·有司 등 면리조직의 행정실무자에게 보낸 전령이 11건으로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邑場·各場市·宮北場·平林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고을 시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7건이 확인된다. 따라서 43건의 전령은 대부분 고을 전체 또는 시장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면리조직의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령의 발급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場市의 폐단 및 고을에서의 약탈·행패·다툼·문서위조 등에 대해 禁斷을 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전령이 가장 많으며, 총 16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는 吏民逋欠의 公錢과 관련된 전령이 9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結稅·結負·災結·考卜 등 세금 관련 내용이 5건, 勸學과 勸農 관련 전령이 5건, 건물·수리시설·도로·교량 등의 보수와 수리에 관한 것이 4건으로 모두 수령철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인구조사를 위해 家座成冊 작성을 명하거나, 訴狀 제출 이전에 鄉廳의 踏印이 필요하다고 알리거나, 國恤과 成服 절차를 알린 전령, 鄉所의 과소비를 금지할 것을 명한 전령 등 4건이 확인된다. 오홍묵은 이상에서 언급한 전령을 발급함으로써 기록물을 통해 지역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였고, 지방관의 대민정치의 중요 수단으로 전령을 적극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령이라는 기록물은 지방관이 대민정치에 있어 지역민 또는 행정실무자에게 지방관의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명령하거나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기에 전령 내용 마지막 부분에 전령의 전달방식에 대해 기록하였다. 오홍묵의 전령에서 전달방식에 대해 언급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1) (경상감영의 甘結에 의하면) 이 甘結이 도착하는 즉시 각 고을에서는 이런 뜻을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하여 배껴, 各面·各里에 전령을 보내어 당부하여, 동네동네 굽이굽이마다 붙여 게시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몰랐다는 탄식이 없도록 하시오.²⁰⁾
- (A-2) 이에 배껴써서 전령하니 本里 各洞에서는 만약에 이와 같은 종류로 내침하는 폐단이 있으면, 洞中에서 지명하여 결박하여 잡아들이고, 이를 본청에 轉報하면 죄상을 심리하여 처벌할 것이다. 앞으로 이 전령을 통행이 많은 골목의 접포 벽에 걸어붙여 형편을 보고할 것이다.²¹⁾
- (A-3) 이 令辭를 각동에 전하여 알린 뒤 통행이 많은 골목의 접포 벽에 걸어붙여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탄식이 없도록 하며, 거행한 전말을 각동으로부터 이번 그믐 안에 빨리 보고하여, 다스릴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²²⁾

20) 『함안군총쇄록』 1889년 5월 5일.

“到即將此甘辭眞諺翻謄令飭面里 揭付坊曲 俾無一民不知之歎.”

21) 『함안군총쇄록』 1890년 6월 25일.

“茲以翻謄傳令 本里各洞良中 如有此等來侵之弊 自洞中持名結縛捉納 以爲轉報勘處之地爲旣 將此令辭 揭付通衢店壁後 形止馳報向事.”

22) 『함안군총쇄록』 1889년 4월 24일.

“此令辭 布諭各洞後 揭付通衢店壁 雖愚夫愚婦 俾無不聞 不知之歎爲旣 舉行形止 自各洞 今晦內 星火報來 以爲憑處之地 向事.”

(A-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영에서 함안관아로 특정 사실을 전달할 때에는 甘結이라는 문서 형태를 사용하였고, 해당 사실을 함안관아에서 지역민들에게 재전달할 때에는 전령의 형태로 신속하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감결을 받는 즉시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한 전령을 만들고, 이를 各面·各里의 고을 전체에 보내어 모든 백성에게 전달하라는 점이다.²³⁾ 즉, 한문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번역하여 전령을 유포함으로써 한문을 사용하는 식자층뿐만 아니라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동등하게 중요 정보를 전달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A-2)와 (A-3)의 사례에서는 지역민들이 전령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한문 및 한글로 작성된 전령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골목의 점포 벽에 부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어디에 게시하여야 하는지를 전령의 마지막 부분에 표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전령의 표기 언어 및 게시 장소를 전령의 내용에 포함시켜 지역민 전체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오횡묵이 생산한 주요 기록물은 하체[下帖]이다. 하체는 지방관이 관할 향교, 서원 등의 屬司에 행정 명령 또는 지시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²⁴⁾ 전령이 고을 지역민 전체 또는 면리조직의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하체는 향교, 서원 등의 州縣 속사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횡묵이 생산한 하체는 총 26건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오횡묵이 보낸 下帖와 그 내용

	일자	수취자	주요내용
1	1889.05.04	校中	鄉儒의 폐단을 금하고, 향교 지출장부 비치를 명함
2	1889.05.07	鄉校	樂育齋 유생 선발을 위해 시험문제를 향교에 알림
3	1889.12.01	校中(鄉校)	향교 齋任의 신규 교체에 신재임 결정이 지연됨을 질책함
4	1889.12.14	校中(鄉校)	향교 齋任 천거 문제에 대한 이전 下帖의 답변을 독촉함
5	1889.12.19	齋舍	官講 시험의 날짜를 알림
6	1889.12.21	鄉會	公錢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지연됨을 질책함
7	1890.01.08	查實所	公錢 징수과정에 뇌물이 있음을 알고 엄정한 조사를 명함
8	1890.01.14	會中(鄉會)	會中에서 結數에 따라 배정하기로 결정되자 징수 방법을 명함
9	1890.01.15	鄉會	民逋에서 거두기 어려운 경우 해당 면에 배당할 것이라고 명함
10	1890.01.16	鄉會	民逋 公納의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문책함
11	1890.01.26	校中(鄉校)	향교 제향에 소비하는 비용이 많은 폐단을 금지함
12	1890.02.14	各面訓長	面講 시험의 날짜와 巡題로 실시함을 알림
13	1890.윤2.01	校中(鄉校)	巡題試券을 考課한 결과 합격자 명단과 시상일자를 알림
14	1890.윤2.04	校中(鄉校)	예조에서 공시된 이번 慶科 庭試 일정을 알림

23) 전령의 한글 번역과 지역민에 대한 유포에 대해서는 김봉좌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김봉좌, “조선후기 전령의 한글 번역과 대민 유포,” 『한국문화』 61(2013)).

24) 하체에 관해서는 송철호의 연구에서 일부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6-109).

	일자	수취자	주요내용
15	1890.윤2.07	安仁面(訓長)	시험 미참여 安仁面 사람들에게 巡題 시험 답안을 올릴 것을 알림
16	1890.윤2.20	鄉中(鄉校)	예조에서 공시된 進士試, 生員試, 文科試의 初試 일정을 알림
17	1890.03.16	各面 訓長	無盡亭에서 詩會가 있음을 고을 文人들에게 알릴 것을 명함
18	1890.03.27	各面 訓長	무진정에서 각면 훈장들에게 학문을 권장함
19	1890.05.09	校中(鄉校)	각면 戶數 감소로 戶籍都監과 色吏의 사실조사와 문제해결을 촉구함
20	1890.06.06	鄉校·各面	고을사람들의 萬人傘 헌납 이후 백성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輪示함
21	1890.07.19	一鄉各書齋	文學 勸勉하는 글을 각 서재로 보냄
22	1891.11.17	校中(鄉校)	校齋 首任을 차출하는 대로 보고할 것을 명함
23	1892.11.18	各面 講長·儒生	각면 講長·儒生들에게 권학·향약규범을 교유하고, 감영 시상을 알림
24	1893.02.05	校任·鄉儒	旬題을 공개하고, 해당 답안 제출의 일자와 장소를 알림
25	1893.02.08	齋儒	초기 관아 이전 보조금의 용도와 쓰임에 대해 알림
26	1893.02.23	養士齋·琴川齋·養老社	養士齋·琴川齋·養老社 條規의 미진한 사항을 보충하여 알림

<표 5>에서 하체의 수취자를 살펴보면, 함안 향교가 16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各面의 書齋 訓長들에게 보낸 하체가 7건, 養士齋·琴川齋 등의 齋儒에게 보낸 것이 2건, 文簿查實所로 보낸 하체가 1건으로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하체의 수취 주체는 향교, 서재, 양사재, 금천재, 문부사실소 등 함안의 하위조직에 해당된다. 오횡목이 하체를 보낸 목적을 살펴보면 향교 또는 서재의 훈장을 대상으로 유생 선발 및 시험일정 안내,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하여 공지한 것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吏民逋欠의 公錢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5건, 향교 운영 및 齋任 추천과 관련된 내용이 5건, 詩會 일정 안내 및 勸學과 관련된 것이 3건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각면 戶數 감소에 대해 향교에서의 문제해결을 요구하거나, 萬人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향교에 輪示하고, 관아 이전 보조금 문제, 양사재·금천재·양로사 운영을 위한 條規 등을 알리는 내용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오횡목은 향교 및 서재 등을 대상으로 함안지역의 중요한 사안인 시험, 권학, 공전, 향교 운영 등에 관해 지시·명령하거나 고시함으로써 수령의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하위조직과의 원활한 소통도 아울러 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오횡목이 생산한 주요 기록물 중 하나는 牒呈(牒報)이다. 『함안군총쇄록』에서는 ‘첩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기록물의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첩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²⁵⁾ 첩정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첩정을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특정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향교의 임원·品官·面任·頭民 등이 고을의 수령에게 특정 사항을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경우이다.²⁶⁾ 오횡목의 총쇄록에서는 그 중 전자의 사례만 관찰된다. 즉,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첩정(첩보)이 사용되었고 총 15건이 확인되었다. 오횡목은 함안군 지방관으로 경상감영의 관찰사에게 특정 사실을 보고하

25) 첩정에 관해서는 김완호의 연구에서 자세히 언급된 바 있다(김완호, “조선시대 牒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1』).

26)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연구,”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아카넷, 2004), 156-158. ; 김완호(2011).

기 위해 첩정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오횡목이 경상감사에게 보낸 稟呈·牒報와 그 내용

	일자	수취자	주요내용
1	1889.07.05	경상감사	함안군 僞災 관련 사항을 보고함
2	1890.01.21	경상감사	鄉論에 따라 결정된 吏逋 징수 방법에 대해 보고함
3	1890.윤2.11	경상감사	災結查徵錢 징수 완료분과 미징수 사항의 징수계획을 보고함
4	1890.05.08	경상감사	鎭海 議送에 의한 김재홍·임윤홍 소송의 결과를 감영에 보고함
5	1890.10.19	경상감사	함안의 재해사실을 감영에 보고함
6	1890.12.23	경상감사	80여 결의 災結 사실을 감영에 보고함
7	1891.11.05	경상감사	폭우에 의해 전답과 집이 무너진 참혹한 상황임을 감영에 보고함
8	1891.12.21	경상감사	校齋에서 강학을 실시한 결과를 감영에 보고함
9	1892.02.19	경상감사	防汛, 濬溝, 反耕, 出糞, 畜庫, 貯水 등에 관해 감영에 보고함
10	1892.윤6.02	경상감사	기우제를 시행한다고 감사에게 보고함
11	1892.윤6.27	경상감사	기우제를 마친다고 감사에게 보고함
12	1892.09.13	경상감사	災結 상황을 보고함
13	1892.10.26	경상감사	講學 결과에 대해 감사에게 보고함
14	1893.01.16	경상감사	密陽 川大面 沙堂里 失火 피해자들에게 1냥씩 지급한다고 보고함
15	1893.02.17	경상감사	養士齋·琴川齋·養老社 節目을 成帖하여 감영에 보고함

첩정의 수취자를 살펴보면 모두 경상감사에게 보낸 기록물로 확인된다. 첩정의 내용 가운데 함안 지역 재해 사실을 보고한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吏逋公錢·災結查徵錢 징수 및 僞災에 관한 것이 3건, 기우제 및 수리시설에 관한 내용이 3건, 講學 결과를 보고한 것이 2건이다. 이외에도 鎭海 議送에 대한 소송 결과를 보고하거나 양사재·금천재 규정을 보고하는 등 2건의 사례가 있다. 감사에게 보고한 기록물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횡목은 함안군수로서 수령철사의 업무 중심으로 경상감사에게 첩정을 보내어 자신의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연구에서는 첩정을 사용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전술하였는데, 그 가운데 후자의 경우로 향교의 임원·품관·면임·두민 등이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청원한 첩정의 사례는 『함안군 총쇄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향교에서 오횡목에게 특정 사항을 보고 또는 청원할 경우에는 첩정의 형식이 아닌, 稟目的 형식으로 문서를 올렸다. 품목이 올라오면, 오횡목은 받는 즉시 원본에 題辭·題音 형식으로 답변을 기록하여 향교에 돌려주었다.²⁷⁾ 따라서 19세기 말 함안

27) 『함안군총쇄록』 1889년 12월 23일자에 의하면 하루 동안 鄉인들이 올린 稟目이 총 3건 등장한다. 첫 번째 품목에서는 吏民逋欠 문제를 結數에 따라 분배하겠다고 건의하였고, 오횡목은 즉시 題辭를 작성하여 이민포휼 公錢 징수를 위해 모두에게 일괄 배당할 것과 그 과정에서 폐단이 없도록 장부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명하였다. 향인들이 올린 두 번째 품목에서는 이민포휼의 일괄 배당을 진행하겠다는 점과 담당 아전을 차출하여 장부조사를 하겠다는 점을 건의하였고, 이에 오횡목은 일괄배당에는 여러 사람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장부조사

지역에서는 향교에서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청원할 때에는 품목의 형식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⁸⁾

이상에서는 함안군수 오횡목이 생산한 공적 성격의 기록물 가운데 전령, 하체, 첩정(첩보)을 중심으로 기록물의 성격과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절목·사목, 권선문·포유문, 검안, 방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그 건수가 적고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5. 지방관아 기록물 조사·관리·보존

19세기 말 함안관아에서 기록물을 조사·관리하였던 공간과 기록물을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함안군총쇄록』에서는 기록물 및 서적을 보관하였던 곳으로 戶籍庫, 典籍庫 등이 언급되었으나, 그 위치가 동헌의 북쪽에 있다는 설명뿐이며,²⁹⁾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였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즉 호적과 서적 이외에는 관아의 중요기록물을 별도로 보존하는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세기 영남지역 重記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관아의 중요기록물은 관아 조직인 六房과 色任에 따라 해당 조직별로 보존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842년 봉화현 관아를 예로 들면, 『邑先生案』·『奴婢案』 등의 기록물은 戶長이, 『人吏官案』은 吏房이, 『軍丁查正冊』은 兵房이 담당하여 관아의 조직별로 기록물을 관리하였다.³⁰⁾ 이는 지방관아에 중요기록물 보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오횡목이 함안의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함안의 10년간 기록물을 수합하여 조사할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에 따른 인력과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때 사용한 공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횡목은 1889년 4월 함안에 부임한 이후, 함안의 僞災 사실과 吏民逋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기록물을 조사하는 업무에 매진하였으며, 별도의 文簿查實所라는 임시 조직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기록물

는 향원들이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세 번째 품목에서는 이민포함의 일괄 배당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즉시 政堂 개최를 건의하자 이에 대한 오횡목의 제사에서 정당 개최는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시급한 상황에서는 향교에서의 품목과 지방관의 제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8) 김완호의 연구에서 첩정과 품목 사용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 사족조직의 세력이 강한 기구는 牒冊을 사용하였고,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이 떨어지게 된 기구들은 稟目 등의 다른 양식으로 변형하여 수령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품목을 사용한 향교와 서원은 첩정을 사용한 향교와 서원보다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완호(2011), 40-41).

29) 『함안군총쇄록』 1889년 4월 21일.

“下轎登軒 大房三間 大廳六間 門楣扁以覽德亭 通房在廳之西北隅 冊室在通房西後連屋 蓋凡四間 扁以琴川齋 政堂之南 有吸唱直所 庭之南 有儲置庫 北有戶籍田籍兩庫.”

30) 손계영, “19세기 영남지역 중기를 통해 본 지방관아의 조직과 기록물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8권 제2호(2017), 246-249.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B-1) [1889년 4월 24일] 또 말하기를 “너희 고을에서 탄로난 폐단이 이미 이와 같으니, 도망간 것을 숨기고 폐단을 숨긴 것을 또한 미루어 알 수 있다. 위계사실은 곧 마땅히 내가 직접 조사할 것이다. 내일부터 各面의 書員은 文簿를 가지고 內東軒에 대령하여라.”³¹⁾
- (B-2) [1889년 4월 27일] 위계 사실을 조사하는 일로 연일 직접 검사한 여러 아전들이 말하기를 “結卜이 오고간 것은 각 고을의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면 실로 자세히 파헤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곧바로 傳令하여 眼同色吏 등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內衙에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³²⁾
- (B-3) [1889년 5월 6일] (황정의의 염탐결과에 의하면) 移轉하는 쌀이나 세금으로 받은 돈은 結數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 지금은 每結마다 5錢7分씩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부과한 액수를 들어온 액수와 비교해보면, 부과한 것이 몇 배나 되는지 모릅니다. 담당 아전들이 멋대로 부과하여 농간을 부리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查實所 排件記를 낱알이 적발해야 할 것입니다.³³⁾
- (B-4) [1889년 5월 10일] 公兪를 불러 말하기를 “...담당할 아전으로는, 僞災를 담당하던 아전 황정의를 차출하였으니, 座首, 別監, 公兪, 各面의 담당자 및 고을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상세히 조사하여 바로 잡도록 하라. 그리고 각처의 문서는 10년 전까지의 謄錄도 아울러 모아 內衙에 대령시키도록 하라. 나도 마땅히 직접 검사하겠다...”라고 했다.³⁴⁾

(B-1)과 (B-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各面 書員의 文簿를 관아의 아전들이 단순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수령의 업무 공간인 內東軒에서 진행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제 기록물을 확인해 보니 기록물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아전들이 조사하기에 역부족임을 알게 되었다. 각면의 일을 맡아 장부의 내용을 잘 아는 이들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을의 실정을 아는 眼同色吏를 불러 관련 기록물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때 기록물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장소로 內衙를 지정하여 문부사실소라 명명하였다. 內衙는 수령과 그 가족의 거주 공간이다. 함안관아의 내아는 東軒 政堂의 남쪽에 위치하였으며, 18칸에 달하는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³⁵⁾ 정선군과 자인현 내아보다 넓은 공간을 갖추고, 오흥목의 부양가족이 함안으로 함께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아의 공간이 더욱 넉넉

31) 『함안군총쇄록』 1889년 4월 24일.
 “且曰 汝邑綻露之弊端 既如此 則其隱遁隱弊 亦可推知也 僞災查實 卽當親查矣 自明日持各面書員文簿 待令于內東軒.”

32) 『함안군총쇄록』 1889년 4월 27일.
 “以僞災查實事 連日親檢諸吏曰 結卜之往來 若非各洞知事人 實難詳覈云 故卽爲傳令 招入眼同色吏等 使之查實於內衙.”

33) 『함안군총쇄록』 1889년 5월 6일.
 “移轉米貫錢 從結數分排 而年加歲增 今至每結五錢七分式排捧 以其排數 較諸所入所排 不知其加倍 而該色之濫排作奸 非徒一二件事 查實所排件記一一摘拔事.”

34) 『함안군총쇄록』 1889년 5월 10일.
 “招公兪曰 … 色吏則僞災色吏 仍差黃貞懿 及座首別監公兪各面知事鄉人 并眼同詳查歸正 而各所文簿 則限十年謄軸 并待令聚會內衙舉行 余亦當親檢矣 ….”

35) 『함안군총쇄록』 1889년 4월 21일.
 “內衙在政堂之南亦東向而間凡十八寬敞高大比旌善慈仁可謂壯麗.”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3)과 (B-4)에 따르면, 함안지역에서는 담당 아전의 농간으로 結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때 1結당 납부 금액을 계속적으로 늘려 원액수보다 몇 배를 납부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문부사실소에서는 세금 납부 기록인 排件記를 낱낱이 조사하였던 것이다. 또한 담당 아전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토지를 僞災로 신고하여 세금을 면제받은 사례가 많았는데, 재해 신고 사실을 기록한 10년 전 기록물까지 모두 내아의 문부사실소에 제출하게 하여 엄격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문부사실소에서 조사하였던 기록물의 종류로는 『戶布磨鍊磨軸』, 『三稅及砲糧磨鍊磨軸』, 『移轉貫捧上冊子』, 『統無利捧上冊子』, 『鄉屯別破錢捧上冊子』, 『戶布捧上冊子』, 『三稅砲糧官需捧上冊子』, 『營作錢捧上區別冊子』, 『統還捧上冊子』, 『傳關錢捧上冊子』, 『試砲錢磨鍊磨軸』, 『逐朔捧上冊子』, 『賑恤文書』, 『執災成冊』, 『俵災成冊』, 『各面書員合記』, 『各洞井軍作夫記』, 『依踏印件記』, 『磨鍊』, 『排鍊捧上冊子』 등이 있다.³⁶⁾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과 10년간의 기록물을 조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10년간의 기록물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각면에서 조사할 사람을 차출하게 하였고, 아전이나 백성[吏民] 가운데 자진하여 조사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함으로써 각종 기록물 조사에 박차를 가하였다.³⁷⁾ 또한 오형묵은 문부사실소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점검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의 또 다른 폐해를 줄이고자 하였다.³⁸⁾ 조사 내용 가운데 僞災 사실과 관련된 기록물의 조사는 달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던 반면,³⁹⁾ 吏民逋欠 조사는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장기간 기록물 조사가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오형묵은 함안지역의 오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물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10년간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장기간의 조사 과정이 필요한 대규모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간이 넓고 독립적인 장소가 필요하였다. 오형묵은 일상의 공적 업무

36) 『함안군총쇄록』 1889년 5월 6일.

“戶布磨鍊磨軸 三稅及砲糧磨鍊磨軸 移轉貫捧上冊子 統無利捧上冊子 鄉屯別破錢捧上冊子 戶布捧上冊子 三稅砲糧官需捧上冊子 營作錢捧上區別冊子 統還捧上冊子 傳關錢捧上冊子 試砲錢磨鍊磨軸 及逐朔捧上冊子 賑恤文書 執災成冊 俵災成冊 各面書員合記 各洞井軍作夫記 依踏印件記 一并捧上差出解事色吏查實磨鍊 則自然露出事 … 餘外查實段盡在於磨鍊排鍊捧上等冊子探考則自可露出事.”

37) 『함안군총쇄록』 1889년 5월 17일.

“因面報差出 以文簿查實事 吏民解事者 率自聚在于內衙.”

38) 『함안군총쇄록』 1889년 5월 20일. “午後 入文簿查實所 親檢.”; 『함안군총쇄록』 1889.06.03. “是日 各項文簿親檢.”; 『함안군총쇄록』 1889년 6월 4일. “入查實所點檢文書.”; 『함안군총쇄록』 1889년 6월 6일. “邑查文簿未勘者 加以數日 則似可出場 不必執一無權 乃以勘簿後 治發爲定.”; 『함안군총쇄록』 1889년 6월 10일. “是日午間 入內衙查實所.”

39) 『함안군총쇄록』 1889년 6월 15일.

“賀禮謁聖 權停文簿查實 任之而已 則出傷似無期限 故自數日前每於朝任後 親往親檢 日暮後出來 如是凡五日 而今始見畢僞災查實.”

40) 『함안군총쇄록』 1890년 1월 20일.

“招公兄分付 曰吏逋之鄉會中查實件記 尙不入來 … 又招公兄出給兩件記 使之綜核歸正 是時民與吏欄商公議 … 余曰吏民所論俱合 以此施行 卽爲成貼 以給民 皆大悅 有欣欣然滿面景色 卽命官廚 以酒肴待之 後退去.”

공간인 東軒이 아닌, 자신의 생활공간인 內衙를 개방함으로써 특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그간의 축적된 기록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함안의 묵은 폐단들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관아에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謄寫와 成冊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지방관아에서는 원본을 직접 소장하기보다는 원본을 베껴 쓴 뒤 成冊(또는 成帖)하여 보존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謄寫와 成冊의 과정을 통해 영구보존용 기록물을 별도로 제작하였던 것이다. 함안관아에서도 성책 또는 성첩 형태로 일반적인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다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1) 또 새로 부임한 뒤에는 온 고을 백성들의 숫자를 자세히 알지 않으면 안 되니, 家座成冊을 만들라고 執綱·各洞의 戶首 有司에게 전령하였다.⁴¹⁾
- (C-2) (향교에서는) 이제부터 齋任·公鄉員 이외에는 일체 향교 재산을 소비할 수 없도록 하여 세밀하고 간소하게 하도록 힘써,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할 것이며, 이번 달에 쓴 것은 반드시 다음달 1일에 成冊·成貼으로 만들어 비치하여, 연말에 가서 마감하여 구분하는 자료로 삼도록 할 것이다.⁴²⁾
- (C-3) 황정의와 함께 의논하며 혁파하되 자잘하고 모호한 것은 제쳐두고 긴요한 것만 묶어 두고, 실제로 근거할 것이 있는 경우는 절목을 만들어 18개 면에 나누어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成冊하도록 하였다.⁴³⁾

이와 같이 (C-1)에서는 함안의 인구조사 결과를 家座成冊으로 제작하도록 명하였고, (C-2)에서는 향교에서 소비한 액수를 한 달 단위로 성책·성첩하도록 명하였다. (C-3)에서는 각 고을에 필요한 규정을 절목으로 만들어 면 단위로 나누어주고, 해당 절목을 각면에서 성책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한편 문부사실소에서 함안의 폐단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였던 기록물의 명칭을 살펴보면 ‘冊子’, ‘成冊’, ‘件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명칭에서도 기록물의 형태가 성책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특히 함안군 관아에는 글씨를 잘 쓰는 아전이 많았으므로 오형묵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책자를 함안관아에서 등사하곤 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함안군총쇄록』 1889년 4월 27일.
 “且新莅後 一邑民戶之數 不可不詳知者 故家座成冊 次傳令執綱各洞戶首有司.”

42) 『함안군총쇄록』 1889년 5월 4일.
 “從茲以往 齋任及因公鄉員外 切勿舉論 務從精略 期有實效爲跡 今朔所用 必於來月初一日 修成冊成貼 以置俾爲歲末磨勘區別之地而已.”

43) 『함안군총쇄록』 1889년 6월 15일.
 “與黃貞懿相確除, 置其細瑣模糊, 自撮其緊, 實有可據者, 作爲節目, 頒給十八面, 次使之成冊.”

44) 『戶布磨鍊磨軸』, 『三稅及砲糧磨鍊磨軸』 등의 ‘磨軸’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 대체적으로 『移轉貫捧上冊子』, 『統無利捧上冊子』, 『鄉屯別破錢捧上冊子』, 『戶布捧上冊子』, 『三稅砲糧官需捧上冊子』, 『營作錢捧上區別冊子』, 『統還捧上冊子』, 『傳關錢捧上冊子』, 『試砲錢磨鍊冊子』, 『逐朔捧上冊子』, 『排鍊捧上冊子』, 『俠災成冊』, 『俠災成冊』, 『依踏印件記』 등의 ‘冊子’, ‘成冊’, ‘件記’ 등의 용어가 많음을 알 수 있다(『함안군총쇄록』 1889년 5월 6일. 참조).

- (D-1) 여러 아전들을 불러모아 『叢瑣錄』을 나누어주고, 冊室에서 謄寫하도록 하였다.⁴⁵⁾
- (D-2) 『山林經濟』를 일찍이 소장하고 싶었는데, 영평 선비 신종표가 빌려주어 여러 관리들에게 나누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謄寫하게 하였다.⁴⁶⁾
- (D-3) 지난날 내가 慈仁에 있을 때 향교에 간직되어 있던 『輿地勝覽』을 보았다. 속으로 한 건을 구해 두려고 혹시 謄寫를 하고자 했으나, 영남에는 판본이 없고, 또 무척 바쁘고 여가가 없어 등사하지 못해 항상 속으로 이를 한스럽게 여겼다. 지금 함안의 관리들 중에 글씨를 잘 쓰는 자들이 많고, 마침 자인에 인편이 있기에 『여지승람』을 빌려오니, 그 책이 방대하고 또 책 뒤에 덧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대략 增減을 더하고 여러 관리들에게 나누어주고 정서하게 하여 이제야 완성하게 되었다.⁴⁷⁾

(D-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횡목은 자신의 일기이자 일지인 『총쇄록』을 글씨 잘 쓰는 아전들을 통해 깨끗하게 다시 작성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동헌의 서쪽에 위치한 네 칸 면적의 冊室에서 이루어졌다.⁴⁸⁾ (D-2)와 (D-3)은 오횡목이 평소 소장하고 싶었던 『산림경제』와 『여지승람』을 私家와 자인 향교에서 빌려 함안 관리들에게 등사하게 하였던 사례이다. 함안관아에는 글씨 잘 쓰는 아전이 많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관아에서 생산 또는 접수된 다양한 기록들은 이와 같은 善書者들에 의해 등사되어 성책 또는 성첩 형태로 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록물은 이후 참고자료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영구보존용의 가치를 가진 기록물로 보존되었다.

6.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19세기 말 함안지역 지방관 오횡목의 사적 일기이자 공적 일지인 『함안군총쇄록』을 통해 지방관의 업무와 기록물의 중요성, 속사 및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생산된 기록물의 종류와 성격, 향리와 면리조직 실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기록물 조사 과정, 지방관아 기록물 보존을 위한 방편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오횡목의 대민정치와 지역통치에 있어 기록물이 가장 중요한 통치 수단 중 하나였으며, 기록물을 통해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였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령칠사를 중심으로 함안군수 오횡목

45) 『함안군총쇄록』 1891년 3월 28일.

“招集諸吏 分給叢瑣錄 謄寫于冊室.”

46) 『함안군총쇄록』 1892년 11월 19일.

“山林經濟 嘗所願儲者 而永平慎雅宗約 許借來 分給諸吏 使之謄寫.”

47) 『함안군총쇄록』 1892년 윤6월 13일.

“往余在慈仁 得見校藏輿地勝覽 心欲求置一件 或謄寫一統 嶺下無板本 且恩遽無暇 未得謄寫 心常恨之 今在巴陵吏 多善書者 適有慈仁人便 借致勝覽 以其卷帙浩穰 且有書後容入者 故略加增損 分手諸吏 淨書至是告訖.”

48) 『함안군총쇄록』 1889년 4월 21일.

“冊室在通房西後連屋 蓋凡四間 扁以琴川齋.”

의 수행 업무를 다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기록물에 근거하여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밝혔다. 오횡묵은 함안의 외지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기록물 조사·점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로 점점 지쳐갔으나, 뛰어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만인산을 헌납받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조정과 임금에게도 인정받음으로써 함안 지방관 임기의 유임을 통해 4년간 함안군수를 역임할 수 있었다.

둘째, 함안군수 오횡묵이 임지를 통치하기 위해 지방관으로서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의 일기에 수록된 지방관 생산 기록물 중 지역민에게 각종 소식과 명령을 전달한 傳命이 43건, 鄕校 등 하위조직에 명령 또는 지시내용을 전달한 下帖가 26건, 경상감사에게 함안의 상황을 보고한 牒呈·牒報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을 기록물의 성격과 수취자, 발급목적, 전달방식 등의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령의 경우 고을 전체 또는 시장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면리조직의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목적으로는 場市의 폐단 및 고을에서의 약탈·행패·다툼·문서위조 등에 대해 禁斷을 명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체의 경우에는 향교를 대상으로 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각면 書齋 訓長과 文簿查實所를 대상으로 발급되었다. 발급목적으로는 향교 또는 서재의 훈장을 대상으로 유생 선발 및 시험일정 안내,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하여 공지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첩정·첩보의 경우에는 모두 경상감사에게 보내었고, 함안지역 재해 사실을 보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셋째, 19세기 말 함안관아에서 기록물을 조사하였던 공간과 기록물을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 다루었다. 오횡묵은 함안에 부임한 이후, 함안의 위재 사실과 이민포함 사실을 밝히기 위해 文簿查實所라는 임시 조직을 구성하여 장부와 문서 등 기록물 조사에 매진하였다. 이를 위해 수령의 거주 공간인 18칸 면적의 內衙를 개방하여 기록물 조사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문부사실소에서는 세금납부 기록, 재해신고 기록 등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난 10년 전 기록물까지 모두 제출하게 하여 엄격히 조사를 실시하였다.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장기간의 조사 과정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넓은 공간과 독립적인 장소가 필요하였는데, 오횡묵은 자신의 생활공간인 내아를 개방함으로써 함안의 묵은 폐단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오횡묵의 일기에는 禮曹, 戶曹, 兵曹, 親軍營, 漢城府, 議政府, 內務府, 統理衙門, 交涉衙門, 堤堰司 등의 중앙기관에서 전달하는 명령 및 지시사항이 함안지역 지역민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기관의 명령과 지시내용이 감영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郡縣의 지방관아로 전달되며, 지방관아의 지방관에 의해 다시 지역민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차후 오횡묵의 임지였던 정선·자인·고성·지도 등과 관련이 있는 오횡묵의 기록물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固城府叢瑣錄』, 『嶺南救恤日記』, 『慈仁縣日錄』, 『旌善郡日錄』, 『智島郡叢瑣錄』, 『咸安郡叢瑣錄』.

김동철. “19세기 말 咸安지방의 鄉戰.” 『한국문화연구』 제2집(1989). 129-194.

김봉좌. “조선후기 傳令의 한글 번역과 대민 유포.” 『한국문화』 제61집(2013). 279-299.

김성윤. “吳奝默을 통해서 본 수령 군현통치의 과정과 전략.” 『조선시대사학보』 제53집(2010). 83-140.

김완호. “조선시대 牒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김혁 외. 『수령의 사생활』.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0.

노혜경. “18세기 후반 수령·향리의 갈등양상.” 『고문서연구』 제26집(2005). 209-234.

박경수. “조선시대 傳令 文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박수정. “叢瑣錄 자료 해제 및 교육적 가치.” 『교육사연구』 제18집 제1호(2008). 39-58.

손계영. “19세기 영남지역 重記를 통해 본 지방관아의 조직과 기록물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8권 제2호(2017). 237-262.

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오인택. “19세기 말엽 경상도 지역의 향촌사호 지배조직과 수령권.” 『지역과 역사』 제2호(1996). 53-94.

이선희. “조선후기 영남지방 지방관의 행정소통 체계와 조정방식.” 『영남학』 제16호(2009). 45-75.

이수건 외.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서울: 아카넷, 2004.

장동표. “19세기 말 咸安地方 財政運營에서의 鄉會와 逋欠.” 『국사관논총』 제68집(1996). 209-249.

장동표. “19세기 말 咸安鄉會의 기능과 성격.” 『지역과 역사』 제2호(1996). 33-52.

채취균. “시험의 힘: 지방관의 영향력 행사와 이미지 형성.” 『영남학』 15(2009). 189-228.

함안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편. 『慶尙道咸安郡叢瑣錄』. 함안: 함안문화원, 2003.

해주오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해주오씨대동보』. 서울: 해주오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9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